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연월일 : 2012. 6. 13

제출자 : 유인환 의원 외 5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 활동기간

- 2012년 6월 21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장문혁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2012. 6. 21 (목)	제1차 조례특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16.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7.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